

의안번호	제 240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8월 13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40
------------	-----

제출연월일 : 2019년 8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체육관의 운영위탁 기간만료(19.12.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상기 충청북도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곰두리체육관 운영
- 위치
 - 장애인복지관 :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호암동)
 - 곰두리체육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사천동)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
- 수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사업비('19년도)
 - 장애인복지관 : 1,861백만원(도비 100%)
 - 곰두리체육관 : 1,165백만원(도비 100%)
- 위탁 주요사무

장애인복지관	곰두리체육관
-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 재활수영, 재활체육, 지역연계사업 등
-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 등	- 수영장 운영, 여가문화지원, 목욕서비스 등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별첨)

3. 참고사항

가. 現,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 위치 :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호암동)
- 규모 : 토지 28,707m², 건물 10,347m²(지하1층, 지상3층)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승덕원(대표 김성천.)
- 사업비 : 1,861백만원(도비 100%)
- 주요업무 :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등
- 조직 · 인력 : 1국 7팀(종사자 28명) ※ 관장 : 이승한(권한대행)
- 이용현황 : 등록회원 7,829명 ※ 1일평균 이용인원 360명
- 위탁운영 약정체결 현황(1차~6차 / 5년주기 / 승덕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90. 4. 1.~ 95. 3. 31.	95. 4. 1.~ 00. 3. 31.	00. 4. 1.~ 05. 3. 31	05. 4. 1.~ 10. 3. 31.	10. 4. 1.~ 14. 12. 31.	15. 1. 1.~ 19. 12. 31.

나. 現,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운영 현황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사천동)
- 규모 : 부지 9,542m², 연면적 3,817m²(지하1·지상3층)
- 수탁기관 : 사)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회장 윤성열)
- 사업비 : 1,165백만원(도비 100%)
- 주요업무 : 재활체육교실, 수영장 운영, 목욕서비스 등
- 조직 · 인력 : 1국 7팀(종사자 21명) ※ 관장 : 안종태
- 이용현황 : 등록회원 1,084명 ※ 1일평균 이용인원 406명
- 위탁운영 약정체결 현황(1차~5차 / 3~5년주기 / 충북사회복지개발회)

1차	2차	3차	4차	5차
99.3.10~ 02.3.9.	02.3.10~ 07.3.9.	07.3.10~ 12.3.9.	12.3.10~ 15.3.9.	15.3.10~ 19.12.31.

다. 관계법령 : 별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운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19.12.31.)됨에 따라 지역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민간위탁(5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 -

I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운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II . 위탁대상 : 2개시설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III. 위탁개요

①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위치 :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호암동)
- 위탁범위 :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전반
- 위탁기간 : 5년('20. 1. 1. ~ '24. 12. 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19년 사업비 : 1,861백만원(도비 100%)

○ 위탁사무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 등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

※ 現,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승덕원('15. 1. 1. ~ '19. 12. 31. 대표 김성천)

②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사천동)

○ 위탁범위 :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운영전반

○ 위탁기간 : 5년('20. 1. 1. ~ '24. 12. 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19년 사업비 : 1,861백만원(도비 100%)

○ 위탁사무

- 재활수영, 재활체육, 지역연계사업 등
- 수영장 운영, 여가문화지원, 목욕서비스 등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 現, 수탁기관 : (사)충북사회복지개발회('15. 3. 9. ~ '19. 12. 31. 대표 윤성열)

IV. 추진체계 및 절차

①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19. 8월
② 의회동의	• 민간위탁 의회동의(8월 회기 중)	'19. 8월
③ 수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 - 방법 : 공개모집(공고15일) 또는 재위탁 - 자격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19. 9월
④ 수탁심사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구성 : 6~9명 정도 - 심사 :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 - 결정 : 공개모집(고득점자 선정) 재위탁(사업실적, 운영효율성 등 고려)	'19. 9월
⑤ 협약공증	• 협약체결 및 공증	'19. 10월
⑥ 사무개시	• 위 · 수탁 사무개시	'20. 1. 1.

V. 세부 추진계획

①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공개모집 : 도 홈페이지 공고(15일) 후 사업계획서 접수, 수탁 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정(고득점자 선정)
- 재 위 탁 : 사업실적, 운영효율성 등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②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개최시기 : '19. 9월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 구성인원 : 6~9명 이내(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당연직 3(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기타(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수탁자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협력 등
- 계획설명 :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의 경우 : 고득점기관 선정
 - 재위탁의 경우 : 사업실적, 운영효율성 등 고려 선정

③ 협약체결 및 공증

- 체결시기 : '19. 10월
- 내용 :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업무 인수·인계
※ 업무 인수·인계(수탁기관 변경시)

VII.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9. 9월 초
- 수탁기관 선정방법 결정 : '19. 9월 중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9. 9월 말
- 협약 체결 및 공증 : '19. 10월
- 위·수탁사무 개시 : '20. 1. 1.

관 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 한다. <개정 2009. 5. 8>

③ 복지시설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5.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 위탁시설 개요

- 기관명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승덕원(김성천)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호암동 751-7)
- 규모 : 토지 28,707m², 건물 10,347m²(지하1층, 지상3층)
- 위탁기간 : 2015. 1. 1. ~ 2019. 12. 31.
- 관련사진



□ 위탁성과내용

○ 사업별·연도별 성과

[단위: 명 / 연인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6월
교육지원팀	실무자네트워크교육	214	119	135	72	50
	종사자전체교육	257	218	191	210	
	종사자역량강화사업	92	85	86	99	3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	-	-	2,560	2,833	1,219
	북부권 나들이	-	-	50	31	35
	발달장애인공정행동사업	-	-	-	263	339
기능향상팀	심리치료	282	261	262	566	332
	물리치료	1,983	1,602	1,901	1,823	1,145
	언어치료	815	784	641	979	480
지역옹호팀	장애인식개선사업	2,722	3,920	2,943	2,254	1,279
	상담사례사업	2,745	2,081	2,180	2,185	1,568
	재가복지사업	4,007	4,093	3,485	2,498	1,890
	건강증진사업	4,423	429	459	675	196
사회문화팀	여성장애인평생교육사업	1,021	1,410,	1,511	1,714	941
	충북동호인탁구대회	-	-	-	124	275
	충북어울림보치아대회	310	400	555	300	
운영지원팀	급식사업	37,808	36,761	37,610	28,552	18,845
	셔틀지원	64,723	58,002	53,610	34,277	16,252
직업지원팀	중증일감센터사업	20,613	13,133	8,858	15,380	7,219
	정보화교육사업	6,732	7,601	7,776	5,836	2,106
	장애인일자리사업	7,314	7,185	13,606	16,748	13,236

○ 기타성과

연도	내 용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장애인복지관평가(보건복지부) ‘5회 연속 우수 기관 선정’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사회복지법인 승덕원) ○ 장애인영양증진기금사업지원(사회복지법인 승덕원) ○ 중증일감센터 환경개선사업(사회복지법인 승덕원) ○ 아이티캐너스기금사업 선정(다음세대재단) ○ 위기 사례 생계지원사업 선정(셀트리온복지재단) ○ 201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선정(산림청)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모니홀 리모델링 지원(사회복지법인 승덕원) ○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와 사회적응과 역량증진을 위한 ‘우리 모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선정 - 1억원 지원(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긴급지원사업 선정(한국장애인재단)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중증장애인지원고용 관리위탁사업 선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지사) ○ 충주시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충주시) ○ 2차년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선정 - 1억원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스틸하우스 선정(포스코)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재가장애인 폭염극복 생수 지원사업 실시(사회복지법인 승덕원) ○ 도전적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사업(사회복지법인 승덕원) ○ 회계·사무원 인건비 지원(사회복지법인 승덕원) ○ 중증장애인고용 관리위탁사업 선정(장애인고용공단충북지사) ○ 3차년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선정 -7천만원 지원(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복지관 노무사 지원사업(사회복지법인 승덕원) ○ 회계·사무원 인건비 지원(사회복지법인 승덕원) ○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사업(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성인전환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협회공동사업 온달 커뮤니티(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매년 지원 선정	<p>2015 ~ 2019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격차해소사업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충청북도) ○ 여성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충주시) ○ 생활체육지원사업 선정(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 충북장애인어울림보치아대회(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

□ 위탁시설 개요

- 기관명 :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관장 안종태)
- 수탁법인 :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회장 윤성열)
- 소재지 :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사천동)
- 규모 : 부지 9,542m², 연면적3,817m²(지하1층·지상3층)
- 위탁기간 : 2015. 03. 10. ~ 2019. 12. 31. (4년 9개월)
- 관련사진



□ 위탁성과내용

○ 사업별·연도별 성과

(명, 연인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말
장애인재활체육 진흥사업	56,123	91,004	107,508	97,083	60,640
재활수영교실	33,618	54,087	62,797	55,562	33,154
	19,449	32,988	39,794	38,053	23,930
	3,056	3,929	4,917	3,468	3,556
지자체위탁사업	2,050	1,850	2,171	2,000	-
장애인아동 수영캠프	1,890	1,680	2,000	1,800	-
장애인아동자연 학습체험	160	170	171	200	-
건강관리지원사업	16,033	22,960	23,906	24,570	12,346
물리치료실	2,091	3,368	3,695	4,030	2,452
	858	1,456	1,406	1,394	701
	13,084	18,136	18,805	19,146	9,193

○ 기타성과

- 2018 사회복지자원봉사 우수 관리센터 선정(보건복지부)
- 문화순회사업 신나는 예술여행 수행(2015~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 청주대학교 지역사회 공헌 교육프로그램 수행(2017~2019년)
- 찾아가는 금연상담(충북금연지원센터 2016~2018년)

- 직원수상내역

성명	직책	수상일자	훈격	비고
이동섭	사회복지사	2015.12.08.	청주시장	
임창권	시설관리팀장	2016.04.26.	청주시장	
김수진	복지기획팀장	2016.04.29.	충청북도의장상	
신재영	안내담당	2016.08.28.	청주시장	
김수진	복지지원팀장	2017.04.19.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혜연	사회복지사	2017.06.08.	충청북도의회의장	
안종태	관장	2017.09.07.	보건복지부장관	
안종태	관장	2018.06.05.	우민상	
김윤정	사회복지사	2018.12.07.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상	
김혜연	사회복지사	2019.04.11.	충청북도지사	

- 외부공모사업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청주시 4개 구청	장애인 수영캠프	2015년 1월, 7월	36,100천원
청주시	장애인 자연학습체험	2015년 5월	20,000천원
충청북도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2015년 7월	3,020천원
청주시 4개 구청	장애인 수영캠프	2016년 3월	40,000천원
청주시	장애인 자연학습체험	2016년 4월	20,000천원
청주시 4개 구청	장애인 수영캠프	2017년 2월	40,000천원
청주시	장애인 자연학습체험	2017년 4월	20,000천원
충청북도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물리치료기기 지원	2017년 8월	17,640천원
충청북도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수중재활운동 프로그램	2017년 8월	8,676천원
청주시 4개 구청	장애인 수영캠프	2018년 2월	40,000천원
청주시	장애인 자연학습체험	2018년 8월	25,000천원